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4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주택법」(법률 제1883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이 개정되어 도입된 바닥충격음 사후 성능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서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을 면적, 층수 등으로 구분된 유형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예방하고,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바닥구조 시공 완료 후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1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시공 단계별로 3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바닥구조 시공 단계 점검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성능검사 세대 수 선정 방법 개정(안 제28조제2항)
- 나. 바닥구조 시공확인서 제출 횟수 개정 (안 제37조제5항, 별지4호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9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평면유형, 면적이나 층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선정하며,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유형별 세대 수의 2퍼센트(세대 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이며,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로 무작위 추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용면적 :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2. 층수 : 10층 이하, 10층 초과 30층 이하, 30층 초과

제37조제5항 중 “바닥구조의 시공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확인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

·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는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승인번호	승인일자
대지위치	지번

인정번호	인정제품명	바닥구조 공사기간	~
		감 리 자	(서명 또는 인)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1단계 (슬래브 타 설 전·후)	슬래브 타설 전 타설높이 확인용 레벨 스페이서(레벨봉) 설치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슬래브 콘크리트 압축강도 적정성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슬래브 두께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확인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2단계 (완충재 시 공 전·후)	슬래브 바탕정리 상태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정서 시공방법 숙지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마감기준선 먹줄놓기 높이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공인품질시험기관 완충재 성능시험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리자의 본 시공 전 완충재 시험성적 서·인정서 성능 값 비교확인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측면완충재 시공 상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바닥완충재 시공 상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확인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3단계 (마감 모르 타르 타설 전·후)	기포콘크리트 타설 상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마감모르타르 압축강도 적정성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마감모르타르 타설상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마감모르타르와 측면완충재 이격상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 확인사항	
확인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제)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성능검사 대상 및 측정 세대의 선정방법 등) ① (생략)</p> <p>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9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은 <u>평면유형, 면적이나 층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선정하며,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한다.</u></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제37조(품질 및 시공방법) ① ~ ④ (생략)</p> <p>⑤ 감리자는 <u>바닥구조의 시공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u></p>	<p>제28조(성능검사 대상 및 측정 세대의 선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세대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이며,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로 무작위 추출한다.</u></p> <p>1. <u>전용면적 :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u></p> <p>2. <u>층수 : 10층 이하, 10층 초과 30층 이하, 30층 초과</u></p> <p>제37조(품질 및 시공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로 -----</u> -----</p>

주체는 감리자가 제출한 바닥구
조 시공확인서를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